



환경부

## 환경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 용도 지정 산업계 간담회 참석 요청

---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위해성이 있는 생활화학제품을 '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'으로 지정(신규 용도 지정 포함)하고 해당 제품의 제조·수입자가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하여 안전·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3. 이와 관련하여 단열코팅용 특수목적코팅제 등 6개 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규 용도로 지정하기에 앞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일 시 : 2023.2.28.(화) 14:10~16:10

나. 장 소 : 서울역 인근 회의실(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 지하2층 강당)

다. 참석대상 : 환경부, 환경산업기술원, 신규 용도 제품(단열코팅용 특수목적코팅제, 자동차 퍼티용 접합제, 미용접착제 제거용·전자기기 이물질 제거용·녹 제거용·자동차 철분제거용 제거제) 제조·수입자

라. 주요내용 :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 및 안전·표시기준 세부사항 설명, 신규 용도 제품의 안전기준(안) 등 산업계 의견 수렴

붙임 : 회의장 약도(별첨) 1부. 끝.

## 환 경 부 장 관



수신자 신규 용도 제품(단열코팅용 특수목적코팅제, 자동차 페티용 접합제, 미용접착제 제거용·전자기기 이물질 제거  
용·녹 제거용·자동차 철분제거용 제거제) 제조·수입자,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

주무관 **신종환** 서기관 **한미옥** 과장 **권병철** 전결 2023. 2. 16.

협조자

시행 화학제품관리과-208 (2023. 2. 16.) 접수

우 30103 세종 도움6로 7층 / <http://me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6826 팩스번호 044-201-6786 / [asowner2@me.go.kr](mailto:asowner2@me.go.kr) / 대국민 공개